

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

제24회 월례발표회 자료집

「조선시대 추국(推鞠)에서의 문사낭청(問事郎廳)」
(이하경, 한국학중앙연구원)

○ 일시: 2월 25일(금) 15:00 ~ 18:00

○ 장소: Zoom 회의

이 자료집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019S1A5C2A02082825)

목차

「조선시대 추국(推鞠)에서의 문사낭청(問事郎廳)」 (이하경, 한국학중앙연구원)	4
--	---

조선시대 추국(推鞠)에서의 문사낭청(問事郎廳)

머리말

- I. 문사낭청의 법적 지위 및 역할
- II. 문사낭청 연루 사례분석
 - 1. 죄인 심문하는 역할과 관련된 사례
 - 2. 추국 기록하는 역할과 관련된 사례
- III. 추국에서 문사낭청의 역할과 추국 기록의 정치적 의미

맺음말

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추국(推鞠)에서 문사낭청(問事郎廳)의 법적 지위 및 역할을 분석하고 나아가 문사낭청이 연루된 추국 사례들에 주목하였다. 문사낭청은 죄인을 추국할 때 차출되어, 문목(問目) 작성을 돕고, 문목을 죄인에게 읽어주며, 죄인이 진술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관원이다. 최근 추국에 관한 법제사 및 법사회사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문사낭청에 주목한 별도의 연구논문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추국 기록의 의미를 살펴보고 심문기록에 관한 연구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추국의 현장에서 기록을 담당했던 문사낭청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사낭청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추국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이 문사낭청이 작성한 추국 기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심문기록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형문(刑問) 속에서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과연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구술로 진술하는 공초(供招) 내용을 빠르게 서면어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누락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들이다. 즉,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로 문사낭청이 의도하지 않은 오류들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추국의 현장에서 관련 기록을 담당하던 문사낭청이 오히려 자신이 작성한 기록이 문제가 되어 탄핵을 받거나 심지어 추국에 서게 되는 사건이 적지 않음을 연대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사낭청이 연루된 주요 사례분석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추국에서 문사낭청의 역할을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낭청이 기록한 『추안급국안』 기록의 의미에 대해서 논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조선시대, 추국, 문사낭청, 주체성, 추안급국안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추국(推鞠)에서 문사낭청(問事郎廳)의 법적 지위 및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사낭청은 죄인을 추국할 때 차출되어, 문목(問目) 작성을 돕고, 문목을 죄인에게 읽어주며, 죄인이 진술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일을 담당한 관원이다. 최근 추국에 관련하여 법제사 및 법사회사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문사낭청에만 주목한 별도의 연구논문은 없는 상황이다.¹⁾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추국의 의미를 살펴보고 심문기록에 관한 연구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추국의 현장에서 기록을 담당했던 문사낭청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사낭청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추국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이 문사낭청이 작성한 추국 기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문사낭청이 기록한 추안(推案)이나 국안(鞫案)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상세하게 논구된 바 있다.²⁾ 반면, 심문기록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있었는데 이때에는 주로 추국의 문사낭청이 ‘의도하지 않은’ 오류들이 문제가 되었다.³⁾ 조선시대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형문(刑問) 속에서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과연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구술로 진술하는 공초(供招) 내용을 빠르게 서면어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누락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들이다.

그런데 문사낭청이 추국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죄인의 특정 발언을 왜곡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정치적인 역할을 했던 사례들을 연대기 자료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 본 연구의 주요한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국에 관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동안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문사낭청에 주목한다. 우선, 『금오헌록(金吾憲錄)』의 의금부 당하관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문사낭청의 인적 구성과 법적 지위를 분석한다. 『금오헌록』은 1744년 금부도사(禁府都事) 박명양이 쓰고 1826년 금부도사 이의현이 증보한 것으로, 의금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전(大典)이나 수교(受敎)에서 규정한 것뿐만 아니라, 의금부에서 완의(完議)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아울러, 의금부 직제의 역사적 변천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및 관련 법규 즉,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그리고 『육전조례(六典條例)』 등에서 추적한다.

또한, 문사낭청이 연루된 사례를 심문하는 역할과 기록하는 역할로 대별하여 분석해본다. 그 과정에서 문사낭청이 어떠한 이유로 탄핵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추국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고찰한다. 그러한 문사낭청의 역할에 대한 당시 정치행위자들의 비판과 이후의 재비판을 분석

- 1) 추국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 참조. 오갑균, 1995, 『조선시대사법제도연구』, 삼영사; 김영석, 2013, 「의금부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추국 관련 상세한 연구사 정리는 다음 참조. 이하경, 2021, 「조선후기 추국장에서의 왕 - 영조시기 『추안급국안』 사례를 중심으로 -」, 『법사학연구』 제63호, 93-124면; 이하경, 2018, 「조선후기 추국장의 정치적 의미 - 영조 13년(1737년) 김성탁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제50호, 187-215면 참조.
- 2) 추국 기록은 다른 사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반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추국을 받던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건 계획이나 동기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정치적, 경제적 갈등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기에, 조선의 정치 사회상을 분석하기에 좋은 자료다. 이하경, 2018 「조선후기 추국장의 정치적 의미 - 영조 13년(1737년) 김성탁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제50호, 187-215면 참조.
- 3) 심문기록에 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3장의 내용 참조.
- 4) 박명양·이의현 편 (김영석 역), 2016, 『금오헌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9쪽 참조.

함으로써, 문사낭청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추국에서 죄인의 심문 및 기록을 담당하던 자가, 심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작성한 기록이 문제가 되어 오히려 탄핵당하거나 심지어 추국에 섰다는 점이 갖는 함의를 추론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추국에서의 문사낭청의 역할을 추국 기록의 정치성 문제와 관련지어 논하고자 한다.

I. 문사낭청의 법적 지위 및 역할

문사낭청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므로, 문사낭청에 관한 지위나 품계는 명확하지 않다.⁵⁾ 『금오현록』의 규정을 중심으로 문사낭청이 속하는 의금부 당하관의 인적 구성, 법적 지위 및 역할에서 추론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금오현록』 첫 규정으로 의금부 연혁과 개략적인 직제를 설명하고 있다.

1. 의금부는 태종 14년(1414년)에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를 의금부로 바꾸고, 제조(提調)·진무(鎭撫)·지사(知事)·도사(都事)를 두었다.
 - 1-1. 국왕의 명령을 받아 추국하는 일과 사인(士人)과 서인(庶人)이 제기한 신소(伸訴)·고첩(告牒) 등의 일을 담당한다.
 - 1-2. 판사는 종1품, 지사는 정2품, 동지사는 종 2품이다. 4원인데, 모두 다른 관직을 겸한다.
 - 1-3. 낭청 10원 가운데 참서관은 경력이라 하고, 참하관은 도사라고 한다. 옛 규례에서는 참서관과 참하관이 각각 5원씩이었는데 중간에 참서관 8원, 참하관 2원으로 바뀌었다. 현재의 주상이 경술년(1730, 영조 6년) 국옥 때 “참서관을 수시로 이동시키고 있어 구임에게 책임을 맡긴다는 의미가 전혀 없으니 옛 규례를 회복하게 하라.”고 하여 지금은 참서관과 참하관을 각각 5원씩 차출한다.⁶⁾

1항은 태종 14년에 이르러 의금부의 명칭이 확정되었음을 말한다. 고려 시대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태종 2년에 순군(巡軍)으로, 태종 3년에는 순위부(巡衛府)로 고쳐 의용순금사라 하였다.⁷⁾ 이때에는 절제사(節制使)·첨절제사(簽節制使)·호군(護軍)·사직(司直)·부사직(副司直)을 두었는데, 태종 14년에 의용순금사를 다시 의금부로 바꾸었다. 녹관(祿官)을 없애고 구전관(口傳官)을 두되, 당상(堂上)을 제조(提調)라 칭하고 진무(鎭撫) 2명은 정3품으로, 부진무(副鎭撫) 2명은 종3품으로, 지사(知事) 2명은 4품으로, 도사(都事) 4명은 5, 6품으로 한 것이다.⁸⁾

1-1항은 의금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인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는 주로 ‘왕의 명령을 받아 행하는 추국’이다. 1-2항에서는 당서관이 다른 직을 겸직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의금부의 실무는 당하관 즉, 낭청이 주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당하관은 주로 죄인의 체포, 압

5) 이강욱 역, 2012, 『은대조례』, 한국고전번역원, 421쪽 주 2에 의하면, “중국에서 문사(問事)는 죄인에게 형장(刑杖)을 가하여 심문하는 사람인데 반해, 조선시대 문사낭청은 형장을 직접 치지는 않았다”라고 한다.

6) 김진욱 역주, 2016, 『의금부의 청헌, 금오현록』, 보고서, 35-36쪽.

7)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6월 29일 을해.

8)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1일 신유.

송, 심문 및 문서작성, 임금 호위, 금란, 당직청 근무, 신문고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⁹⁾

1-2항은 의금부 당상관의 직제를 말해주고 있다. 당상관 4명은 주로 종 1품에서 종 2품에 해당하는 고위 관직자나 혹은 작호(爵號)를 가진 공신 등이 겸임하였고, 아래 [표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세기의 『육전조례(六典條例)』에 이르기까지 직제가 유지되었다. 당상관의 경우 정원만 규정하고 각 관의 정원을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이에 대해 오갑균은 임명 당시 품관의 수를 감안하고 담당업무의 과다에 따라 융통성 있게 관원을 배치하려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¹⁰⁾

[표1. 의금부 직제 변화]¹¹⁾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육전조례
관 원	당상관 4명	판사(종1품) 지사(정2품) 동지사(종2품)	좌동	좌동	좌동
	당하관 10명	경력(종4품) 도사(종5품)	경력 혁파 참상도사 5(종6품) 참하도사 5(종9품)	참상 1인 무관 참하 생원 진사	도사(종6품) 도사(종8품)

1-3항은 의금부 당하관의 직제다. 당상관과 달리 당하관은 조선시대 시기별로 직명과 품계가 계속해서 변화였는데, 이는 의금부 운용과 직결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1-3항의 영조대 사례에서도 그 변화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옛 규례는 『경국대전』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종4품인 경력과 종5품인 도사 1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숙종 29년(1703년)에 참하 3명을 경력으로 승급하도록 하였다.¹²⁾ 그러나 영조 6년(1730년) 역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역죄인 박장운이 추국을 받는 도중에 음독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¹³⁾ 당시 나졸들이 뇌물을 받고 독약을 넣어주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자 숙종 29년의 관제 변화로 의금부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이유로 꼽았다.

1-3항에서 말하는 “참상관을 수시로 이동시키고 있어 구임에게 책임을 맡긴다는 의미가 전혀 없으니”라는 것은 당하관의 승진 규정에 관한 것이다. 『경국대전』에서 당하관은 무록관으로서 360일의 임기가 종료되면 승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⁴⁾ 그런데 현종 3년(1662년) 당하관인 종9품 참하도사를 만 30개월의 임기 종료 시 곧바로 종6품으로 승진하도록 규정하였다.¹⁵⁾ 영조 6년 역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영의정 이광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9) 조선 초기 의금부 낭청은 순찰, 포도(捕盜), 금란(禁亂)의 임무. 치안 유지 업무 담당했으나 점차 군사 기능이 사라지면서 함께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갑균, 1995, 『조선시대 사법제도 연구』, 삼영사, 28쪽.

10) 오갑균, 위의 책, 21-23쪽.

11) 출처: 김진옥 역주, 앞의 책, 236쪽에서 재인용.

12) 『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7월 11일 을묘.

13) 『승정원일기』 영조 6년 4월 22일. 이하 참하 직제 변화 내용은 승정원일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한 것임.

14) 『경국대전』 권1, 이전, 경관직조.

15) 『현종실록』 권38, 현종 29년 7월 11일 을묘.

“의금부의 낭청은 본래 음관(蔭官)의 청선직(淸選職)으로, 전에는 참하 5원과 참상(參上) 5원을 반씩 나누어 가려 차출하였는데, 그중 참하는 생원과 진사 중 명망과 세도가 있는 재상의 자제를 가려서 차출하여 30삭(朔)이 차면 비로소 6품으로 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하 5원이 곧 본부의 구임(久任) 주인이 되어 의금부 전체의 일을 전적으로 관리하여, 서리와 하례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일마다 다 단속하여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제를 한번 변통한 뒤로는 여덟 자리를 모두 참상으로 만들어 아침에 제수했다가 저녁에 천전하였습니다. 참하는 2월만 두어 봉사와 직장의 자리로 만들고 그 사람의 됃됨이를 따지지 않고 참봉에서부터 차례로 승진시키고 이 뒤로는 더 이상 구임을 가려 차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전혀 단속되지 않고 본부의 하속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모양새를 갖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옛 제도를 다시 회복하여 참하 다섯 자리를 차출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¹⁶⁾

즉, 이전의 승진 규정과 구성원의 규례를 따를 때는 의금부의 조직이 제대로 관리 및 단속되었는데, 관제의 변화로 더이상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리나 이례(吏隸)들도 전보다 관령(官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당하관의 구성을 예전처럼 참상 5인, 참하 5인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후 영조 22년 『속대전』에서는 경력이 혁파되고 도사 10명으로 규정되었다. 이때 종6품인 참상도사와 종9품인 참하도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품계가 조정되었다. 『대전통편』에서는 참상도사 중에서도 한 명은 무관으로, 참하도사는 생원이나 진사와 출신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육전조례』에서는 도사의 품계가 종6품과 종8품으로 다시 조정되었다. 이러한 직제의 변화는 행정 실무자로서의 낭청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들의 임명과 승진기준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¹⁷⁾

이렇게 본다면, 첫째, 당하관에 속하는 문사낭청은 추국에서 죄인의 심문 및 문서작성을 담당한 실무관리이며, 둘째, 조선시대 시기별로 직명과 품계는 계속해서 변했지만, 주로 종5품에서 종9품에 해당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국 기록에서 추국 참여명단을 보면, 문사낭청으로 차출되는 사람은 주로 홍문관 부교리 (종5품), 홍문관 수찬 (정6품), 홍문관 부수찬 (종6품), 병조정랑 (정5품), 병조 좌랑 (정6품), 이조 좌랑 (정6품) 등이다.

16) 『승정원일기』 영조 6년 4월 22일. 밑줄은 필자 강조.

17) 의금부의 이례 역시 조선후기로 가면서 그 직제에 변화가 있었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육전조례
이 례	서리(書吏) 18 나장(羅將) 232	서리 18 나장 40	서리 20	금형관(禁刑官) 1 서리 20 서사서리(書寫書吏) 1 당무서리(當務書吏) 1 본부대청직(本府大廳直) 2 당직청대청직(當直廳大廳直) 2 나장 80 군사(軍士) 12
		차비노(差備奴) 11 근수노(跟隨奴) 10		

출처: 김진옥 역주, 앞의 책, 236쪽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추국에 참여하는 문사낭청의 인원과 임명은 주로 추국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¹⁸⁾ 추국의 종류는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왕이 직접 추국의 현장에 전좌(殿座)하는 친국(親鞫), 왕이 전좌하지는 않지만, 궁궐 내에서 이뤄지는 정국(庭鞫), 의금부에서 추국을 시행하는 의금부 추국(義禁府推鞫), 그리고 의금부, 의정부, 대간이 함께 추국을 진행하는 삼성추국(三省推鞫)으로 종류별로 참여하는 문사낭청의 수가 상이하다.

『은대조례』 형고(刑攷)에서 “문사낭청은 의금부에서 차출하되, 친국일 때는 8명, 정국을 거행할 때는 6명, 의금부 추국을 거행할 때에는 4명, 삼성추국을 행할 때는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⁹⁾ 이는 『금오헌록』의 5. 설국(設鞫)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⁰⁾ 아래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추국의 종류는 곧 해당 사건의 중요도 및 위급성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왕이 직접 추국 현장에서 추국을 주재하는 친국의 경우는 사건의 중요도나 위급성 등이 다른 사건에 비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문사낭청을 비롯하여 참여하는 관원 역시 다른 추국의 종류에 비해 많다.

[표2. 추국의 종류별 참여 관원]²¹⁾

구분	친국	정국	의금부 추국	삼성추국
대상	반역사건			강상범죄
	가장 중요, 어려운 사건	중간 중요도 난이도	하위 중요도 난이도	
장소	궁궐	궁궐	의금부	의금부
참여 관원	전·현직 정승, 의금부 당상관, 대간, 문서빔, 별형방, 사관			전·현직 정승 중 1인 의금부 당상관, 대간 형방 승지 문사낭청 2인 문서빔, 별형방, 사관
	승지 전원 문사낭청 8인 수막(守幕) 죄인압상도사	형방 승지 문사낭청 6인 수막 죄인압상도사	형방 승지 문사낭청 4인	

다만, 추국 종류별 문사낭청의 인원은 절대적인 규정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대조례』에서도 “문서가 많을 경우에는 문사낭청을 더 차출한다”라고 부기하고 있다.²²⁾ 즉,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기록해야 하는 문서가 많을 경우, 즉 심문의 회

18) 추국의 종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하경, 2021, 앞의 논문, 105-108쪽.

19) 이강욱 역, 앞의 책, 421-427쪽.

20) 김진옥 역주, 앞의 책, 26-63쪽. 예를 들어, <영조 1년(1725년) 죄인 목시룡 추안>에서 목시룡에 대한 추국은 의금부 추국으로 진행되었고 병조정랑 2인, 병조 좌랑, 사포서 별제가 참여하여 모두 4명의 문사낭청이 참여하였다. 전주대학교 한국학고전연구소 편, 2014, 『추안금급안』, 흐름출판사, 40권 66쪽. 또한, <고종 3년(1866) 삼성추안>에서 남편을 죽인 죄인 백옥섭에 대해 삼성추국이 진행되었는데, 홍문관 수찬과 부수찬이 문사낭청으로 차출되었다. 전주대학교 한국학고전연구소 편, 위의 책, 85권 148쪽.

21) 표는 김영석, 2013, 「의금부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20쪽을 참고하되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음.

22) 이강욱 역, 앞의 책, 421쪽.

수가 늘어나거나 사건이 복잡하여 정리할 문서가 많을 경우, 유동적으로 문사낭청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추국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조 7년(1731년) 죄인 성탁 심문기록>에서 성탁에 관한 추국은 의금부 추국이었지만, 문사낭청은 4명이 아니라 6명이었다.²³⁾ 이와는 반대로 <영조 1년(1725년) 죄인 방만규 추안>을 보면, 방만규 추국은 인정문에서 친국으로 진행되었으나, 문사낭청은 6명이었다.²⁴⁾ <영조 9년(1733년) 원팔 심문기록>에 따르면 원팔에 대한 추국도 친국이었지만, 문사낭청은 6명이었다.²⁵⁾

II. 문사낭청 연루 사례분석

1. 죄인 심문하는 역할과 관련된 사례

문사낭청들이 추국에서 죄인을 제대로 심문하였는지가 논란이 된 사건 가운데 아래 세 가지 사건에 주목해 보자. 우선, 성종 25년(1494년) 임광재(任光載)의 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낭청의 국문(鞫問)이 소우(疏虞)하여 실정을 알아낼 수 없었다”라며 성종이 화를 내었다.²⁶⁾ 예종의 딸인 현숙공주(顯肅公主)의 남편인 임광재가 1492년 풍천위(豐川尉)가 되었으나, 행실 문제로 조정에서 계속 논의되었다.²⁷⁾ 그러다 풍천위가 1494년 진천의 양가녀(良家女) 존금(存今)을 첩으로 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자들이 추국을 받았다. 그런데 추국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고, 제대로 사건 규명이 되지 않다고 생각한 성종은 성종 25년 6월 26일에 문사낭청을 하옥시켰다.²⁸⁾ 이 사건은 성종을 비롯한 주요 정치행위자들이 추국 과정에서 문사낭청이 죄인을 심문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사낭청이 어떻게 죄인을 심문하는가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건은 선조 29년 홍인걸(洪仁傑) 사건이다. 홍인걸은 삼척 부사로서 1595년 8월 삼척 지역에서 잡은 포로를 처리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어 추국을 받게 되었다.²⁹⁾ 그런데 헌납(獻納) 남이신(南以信)은 홍인걸이 공을 세우기 위해 죄 없는 백성을 함부로 죽인 것인데, 이를 담당하는 의금부의 당상과 문사낭청이 제대로 심문을 하지 않는다며 비판한 바 있다.³⁰⁾ 남이신은 당시 관료들이 “공공(公共)의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편들어 구해줄 생각에만 급하여, 자기의 말을 거짓으로 장황하게 펴고 동료의 의논이 같지 않은 것을 돌아보지 않고서 감히 대신에게 의논을 거두기를 청하기까지 하여,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요행히 면하게 하려고 꾀하였(하략)”다고 한다. 심문자들이 오히려 홍인걸 편을 들고 있고, 홍인걸을 구해 줄 생각으로 “그 공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을 농간하여 사(私)를 행한 죄”라고 의금부의 당상과 낭청을 모두

23) 문사낭청: 홍문관 수찬, 병조 정랑, 부호군, 부사과 2인, 전(前) 정랑 (전주대학교 한국학고전연구소 편, 앞의 책, 55권 23쪽)

24) 문사낭청: 홍문관 수찬, 봉상시 정, 병조 정랑 2인, 사복시 정, 성균관 사예 (전주대학교 한국학고전연구소 편, 앞의 책, 40권 24쪽)

25) 문사낭청: 홍문관 부교리, 홍문관 수찬, 홍문관 부수찬, 병조 정랑 2인, 부사과 (전주대학교 한국학고전연구소 편, 앞의 책, 56권 249쪽)

26)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6일 계미.

27)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6일 계미; 『성종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4일 경자.

28)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6일 계미.

29)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26일 정유.

30)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24일 병진.

파직해 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요청한 바 있다.³¹⁾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사건은 무옥(誣獄)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즉, 홍인걸에 대한 보고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홍인걸의 명성에 반감이 있었던 관리가 오히려 홍인걸을 가혹하게 고문하여 거짓 자복하게 하였다고 한다.³²⁾ 해당 사건이 과연 무옥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추국을 진행하는 실무진의 역할뿐만 아니라 문사낭청에 대한 비판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무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문사낭청에게 가했던 비판이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광해군 4년(1612년) 2월 22일 김직재(金直哉) 사건이다. 광해군이 김직재를 추국하면서 문사낭청의 심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하였다.

(전략) "문사낭청은 사실을 심문할 때 소루함을 면치 못하였고 명백하게 하지 못하였다. 이른바 임금 측근의 악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연서역에 와서 진을 치고 서울을 범한다고 했으니, 그 절차 및 추대하려고 한 자, 조정을 숙청한다는 일 등, 자세하게 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형신하고 물어보라." 하니, 공초하기를, "추대는 성상께서 [위에] 계시니 죽어도 다른 뜻은 없었고, 숙청은 안처겸(安處謙)의 고사와 같이하려고 했습니다." 하고서 이어 평소에 혐의가 있거나 원한이 있는 사람을 거명하였는데, 이이첨·이창후(李昌後)·유영근(柳永謹)·송순(宋諄) 등과 같은 사람을 모두 제거하려 하였다고 했다. 왕이 이르기를, "문사낭청이 사실을 다 캐묻지 못한다. 추대하려고 했던 자를 아울러 형신하여 심문하라."³³⁾ (후략)

즉, 추국에서 문사낭청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왕이 책망한 것이다. 그런데 김직재의 이 옥사도 무옥으로 알려져 있다.³⁴⁾ 김직재는 “형제와 처자에게 패려(悖戾)한 행실로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해군 2년에 “부친의 상중(喪中)임에도 불구하고 강화 등지에 종군해 주육(酒肉)을 먹은 사실” 때문에 대간의 탄핵을 받은 바 있다.³⁵⁾ 그런데 『광해군일기[중초본]』의 기록에 따르면, 1612년(광해군 4) 2월 황해도 봉산군수 신율(申慄)이 어보(御寶)와 관인을 위조해 군역을 피하려고 했던 김경립(金景立, 일명 濟世)을 체포한 뒤, 유팽석(柳彭錫)을 시켜 무옥을 꾸미게 한 데서 이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³⁶⁾ 즉, 신율은 체포된 김경립에게 8도에 각각 대장(大將)·별장(別將)을 정해 불시에 서울을 함락시키고자 하였으며, 김경립 자신도 여기에 가담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또, 김경립의 아우 김익진(金翼辰)에게는 팔도도대장(八道都大將)이 김백함(金白緘)이며, 김백함은 아버지 김직재의 실직(失職)에 대한 불만을 품고 모역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였다.³⁷⁾

31)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26일 무오.

32)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4345

(마지막 검색일 2022-02-11): 홍인걸의 사돈인 정철(鄭澈)이 동인의 배척을 받고 있어 그 화가 그에게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광세첩(厚光世牒)』 厚光世牒卷之二 文靖公事蹟 東西黨禍錄.

33) 『광해군일기(정초본)』 50권, 광해군 4년(1612) 2월 22일 정해. 밑줄은 필자 강조.

34) 『광해군일기[중초본]』 36권, 광해군 2년 12월 14일 을유.

35) 『광해군일기[중초본]』 36권, 광해군 2년 12월 14일 을유.

36) 『광해군일기[중초본]』 50권, 광해 4년 2월 13일 무인.

37) 『광해군일기[중초본]』 50권, 광해 4년 2월 13일 무인.

그렇다면, 김직재 사건에서 문사낭청의 역할에 대한 비판 역시 정치적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물론 실제로 문사낭청이 자신의 직분을 태만하게 여겼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무고 사건이었다면 심문의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는 데에 반감을 품은 정치행위자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죄인을 심문하는 역할과 관련된 위 세 가지 사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세 사건에서 나온 문사낭청에 대한 비판이 조선시대 문사낭청의 죄인 심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례에서 주목되는 점은 당시 추국 과정에서 심문을 행하는 실무진의 역할에 따라 사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역사적인 진실이 파헤쳐지는지 아닌지가 달라진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문사낭청에 대한 비판 역시 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즉, 문사낭청이 기계적이고 혹은 객관적으로 문목을 낭독하며 죄인을 심문해 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사낭청과 같은 실무진도 일정한 자의성을 개입할 수 있음을 조선시대 정치행위자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즉, 무고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문사낭청의 자의성에 대한 평가 자체를 역으로 활용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2. 추국 기록하는 역할과 관련된 사례

다음으로 문사낭청이 추국 기록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탄핵의 대상이 되거나 추국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도 있다. 첫째, 선조 27년 송유진(宋儒眞)의 역모 사건에서 의병장 이산겸(李山謙)을 공초할 때 문사낭청이 산겸의 역명(役名)과 나이를 적지 않고 바로 하옥시킨 것이 문제가 되었다.³⁸⁾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이산겸은 충청도 지역에서 크게 활약한 바 있는데, 선조 26년 충청도에서 발생한 송유진 역모 사건에서 괴수로 지목되어 추국을 받게 되었다.³⁹⁾ 추국 과정에서 문사낭청이 이산겸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옥시켰다는 이유로 문사낭청은 추고 받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선조수정실록』에서는 이산겸은 역적의 무고로 죽게 된 것으로 보고, 사람들 대부분 원통하게 여겼다고 서술하고 있다.⁴⁰⁾

둘째, 숙종 32년(1706년) 임부(林溥) 사건에서 문사낭청의 기록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충청도의 유생 임부 등이 5월 29일에 “신사년(1701년)의 신사무옥의 추국 과정에서 윤순명(尹順命) 초사(招辭)에 모해(謀害) 등의 말이 있었는데, 국청(鞫廳)에서 ‘모해동궁(謀害東宮)’ 네 글자를 빼어버리고 가리어 숨기면서 아뢰지 않았다”라는 상소문을 올렸다.⁴¹⁾ 그리고 4년 전에 동궁을 모해하려 했던 세력을 처벌할 것을 이들이 청하면서 문사낭청의 역할이 논란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조 참판(工曹參判) 이광적(李光迪)은 아래와 같이 문사낭청이 특정한 말을 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임부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죄인의 초사(招辭)를 받을 때 문사낭청이 추안상(推案床) 좌우(左右)

38)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7일 병신;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3일 임인;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6일 을묘.

39)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6일 을묘.

40) 『선조수정실록』 28권, 선조 27년 1월 1일 경진. 이때 실록의 기록날짜가 상이한 점도 주목을 요한다. 『선조실록』에서는 이산겸에 대해 추국을 행한 날짜가 선조 27년 2월 6일로 나오는데, 『선조수정실록』에는 1월 1일자 기사에서 이산겸이 물고된 것으로 나온다.

41) 임부와 함께 상소한 이들은 김동역을 포함하여 모두 22명이다. 『숙종실록』 43권, 숙종 32년 5월 29일 병술.

에 마주 보고 서서 한결같이 죄인이 구두로 전달한 말을 따라 쓰고, 쓰기를 이미 마치면 문사랑(問事郎)이 큰소리로 한 번 읽어서 죄인으로 하여금 들어서 알게 하여 한마디라도 착오가 없이 한 연후에 죄인이 이름을 쓰면 그 추안을 문사랑이 위관에게 가져다 바치고, 승지는 추안을 가져다 계달(啓達) 하는데, 국청에 참석하여 앉은 사람은 위관·의금부의 당상관·낭관·양사(兩司)·승지·문사낭청이 있습니다. 죄인의 공초(供招)한 말을 쓰는 자는 문사랑이고 듣는 자는 참석하여 앉은 여러 사람이니, 진실로 한마디나 반 마디 말이라도 빼어버린 것이 있으면 눈으로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귀로 들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대수롭지 않은 말이라도 진실로 감히 빼어버리지 못할 것인데, 더구나 위를 범한 무도(無道)한 말을 하여 일이 《춘추(春秋)》에서 반드시 토주(討誅) 하는 데 관계된다면 국청의 여러 신하들로서 어떤 사람들 주살(誅殺)하려는 마음이 없겠습니까?”⁴²⁾

다시 말하자면, 문사낭청이 사사롭게 특정 어구를 뺄 수는 없다고 이광적이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다. 문사낭청이 기록하는 과정에서 죄인의 진술을 받아적은 후, 문사낭청이 그 글을 다시 죄인에게 낭독하고 확인받음으로써 착오가 없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추국에 참여하는 다른 관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사낭청이 독단적으로 특정한 단어를 빼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심지어 임부의 상소문에서 제기하는 말은 부도한 말이기 때문에, 만일 심문 과정에서 그러한 말이 발설되었다면 추국에 참여하던 신하들이 좌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6월 2일에 추국을 열기로 하고 임부 및 문제가 되었던 1701년 추국 관계자들이 추국을 받았고, 다음 해 1월 4일에 임부가 물고되었다. 그 과정에서 문사낭청이 당시 추국 과정에서 ‘음해’라는 단어가 죄인의 입에서 나왔음에도 이를 고의로 지운 것인지, 이에 관련한 내용을 타인에게 퍼뜨렸는지, 그 기록과 관련하여 당시 당사관과 쟁집을 벌였는지 아닌지가 논란이 되었다. 당시 문사낭청이었던 강이상과 여필중은 결국 고의로 지웠음을 자백했는데, 아래는 여필중의 자백 내용 중 일부이다.

“[윤순명의 진술 내용 중에]...장희재가 한글 편지를 보내왔는데 [중략] 황란(荒亂)한 말까지 서로 뒤섞어 다 드러내었으며, 또 말하기를 ‘이 여제(장희재 아내)가 김춘택과 간통하여 끝내는 반드시 우리 집을 멸망(滅亡)시키고 응당 춘궁(春宮)에도 해(害)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였으므로 매우 마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좌상(座上)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말을 마땅히 초지(草紙)에 기재(記載)하여야 하는가, 앓아야 하는가? 그것이 규례(規例)에 있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니, 형방 도사(刑房都事) 윤세유(尹世綏)가 말하기를, ‘문목 외의 잡된 말들은 규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위관은 말하기를, ‘과연 이 문목 외의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래 일에 경험이 없으므로 허둥지둥하는 즈음에 처리할 바를 몰랐던 것이고, 윤세유는 일을 주관

42) 『숙종실록』 43권, 숙종 32년 6월 1일 정해. 밑줄은 필자 강조.

하는 사람으로서 온 국청에서 신임받는 바가 되어 무릇 옥사에 처리한 바가 많을 것인데 대답한 바가 이와 같으므로 다시 역지를 써가며 다투지 못하였습니다. 서청(西廳)에 물러 나와 앉아서 힘을 다하여 다투고 고집하며 기필코 기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낭청이 할 직분인데도 능히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용렬하여 볼품이 없는 소치(所致)이므로 다만 황송하고 부끄러움만 더할 뿐입니다.”⁴³⁾

윤순명의 진술 내용 중에 문사낭청도 문제가 될만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서 다른 관원들과 해당 진술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는 점을 여필증이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문목 외의 말은 쓰지 않는 것이 규례”라는 선임 관원의 말을 따라 논란이 된 어구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은 추국에서 문사낭청이 모든 진술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다기보다는 기록하는 과정에서 특정 진술을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⁴⁴⁾

셋째, 영조 29년 조관빈(趙觀彬) 사건에서는 문사낭청이 추국을 받는 죄인에 대해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대제학(大提學)이었던 조관빈은 영조의 친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를 위해 죽책문(竹冊文)을 작성해서 올리라는 영조의 명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추국을 받게 된 인물이다.⁴⁵⁾ 사친 추궁 작업의 일환으로 영조가 명령을 내렸으나, 조관빈은 숙빈최씨가 후궁에 불과하므로 세자나 세자빈의 책봉문을 담을 때 쓰는 죽책문을 올릴 수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국을 열라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금부 도사들이 추국을 곧바로 거행하지 않았고, 문사낭청 김광국은 조관빈에 대한 문목 초안에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결국, 문사낭청 모두 “죄수를 국문하는 예(例)에 의하여 위협을 받았다.”⁴⁶⁾

문사낭청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료가 현재로서는 부재하지만, 영조는 문사낭청이 자신의 명령대로 추국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추국 과정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사친추송을 하고자 하는 왕의 명령에 반기를 든 신하를 추국하는 과정에 또다시 문사낭청 역시 저항을 하는 것처럼 이해된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곧바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조관빈 추국에서는 문사낭청의 정치적 판단이 추국의 과정이나 추국 기록에 반영될 여지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문사낭청의 추국 기록이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광해군 7년에는 상소장에 부도한 말을 넣었다는 이유로 이창록(李昌祿)이 추국을 받고 당고개에서 처형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헌부에서는 의금부 낭청의 의율 기록을 다음과 같이 문제 삼았다. “[이창록의] 부도한 죄는 실로 모역(謀逆)한 역적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엇그제 추국청에서 의율한 계사를 보니 난언패역율(亂言悖逆律)로 단정하여 흉서(兇書)를 난언이라 하고 ‘대(大)’ 자를 ‘패(悖)’ 자로 바꾸어 부표를 고치기까지 하였습니다.”⁴⁷⁾ 즉,

43) 전주대학교 한국학고전연구소 편, 앞의 책, 35권, 372-373쪽. 밑줄은 필자 강조.

44) 그런데 강이상이나 여필증이 이때 자백을 하기는 했지만, 이후에 다시 반복하였다가 또다시 자백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추안금국안에 수록된 임부의 기록은 부분적으로만 존재하여서 사건의 전말을 살피기는 어렵다. 다만,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의 당시 기록을 고려해 보면,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임부가 상소문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그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여 임부 형제 등이 무고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궁받기도 하였다.

45) 조관빈 사건의 구체적인 분석은 이하경, 2021, 앞의 논문, 103쪽 참조.

46) 『영조실록』 80권, 영조 29년 7월 29일 임오.

47) 『광해군일기(정초본)』 93권 광해군 7년(1615) 8월 23일 정유.

이창록의 죄상에 난언죄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삼았고, 결국 낭청이 추고를 받았다.⁴⁸⁾ 사헌부의 주장대로라면, 이창록 사건에서 문사낭청은 특정한 단어를 누락하거나 삭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에게 형량을 감량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를 행한 것이다.

또한, 광해군 13년에 죄인 구경록(仇景祿)의 공초를 받을 때 문사낭청 서국정(徐國楨)은 긴요한 말을 일부러 누락시켰다는 점이 문제가 된 바 있고,⁴⁹⁾ 인조 6년에는 죄인 김취려(金就礪)의 이름을 김취근(金就近)이라고 잘못 썼다는 이유로 의금부 당상관은 추고 받고 낭청은 파직된 사건도 있었다.⁵⁰⁾ 인조 24년에는 죄인 형란(荊蘭)의 결안(決案) 가운데에 누락된 말이 있다는 이유로 낭청이 추고 받았다.⁵¹⁾ 숙종 26년에도 과옥(科獄) 죄인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시관(試官)이 측간(廁間)에 가면서 했던 행위가 문제가 되었다. 이때 죄인들의 진술에서 과연 ‘측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지에 대해 문사낭청이 명확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바 있다.⁵²⁾ 정조 즉위년 7월에는 심상운(沈翔雲)을 친국한 추안이 명백하지 못하고 소홀하다는 이유로 관련 문사낭청을 추고하였다는 기록도 나온다.⁵³⁾

그렇다면 이러한 문사낭청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물론 몇몇 문사낭청 ‘개인의’ 의도적인 개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문사낭청에게 요구되는 ‘기록관으로서의 책무’, 즉 공정한 심문과 정확한 기록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별 문사낭청 잘못으로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위의 사례들은 어쩌면 기록의 왜곡이나 변형을 찾아내고 다시 바로잡으려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사낭청의 책무에 대한 비판이나 추국 기록의 불완전성에 대한 추궁이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연대기 자료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개별 행위자들의 잘못이거나 왜곡이라고 간주해버리기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상기 언급한 사례에서 논란이 된 것 이외에도 사실상 추국에 참여하는 실무진이 일정한 주체성(agency)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명시적으로 논란이 되지 못한 사건들에서도 죄인을 심문하고 관련 진술을 받아적은 과정에서 이를 담당하는 실무진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Ⅲ. 추국에서 문사낭청의 역할과 추국 기록의 정치적 의미

『추안급국안』의 사료적 가치를 논하면서 논란이 된 사안 중의 하나는 추국을 받는 죄인의 진술이 갖는 ‘신빙성’의 문제였다. 즉, 고문을 받으면서 하는 죄인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조운선은 『추안급국안』은 당시 형신(刑訊)을 수반한 심문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여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⁵⁴⁾ 이에 대해 문경득은 심문 진술 기록의 신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료비판 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다.⁵⁵⁾ 즉, 문경득은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진술과 현대 재

48) 『광해군일기(정초본)』 93권 광해군 7년(1615) 8월 23일 정유.

49) 『광해군일기(정초본)』 166권, 광해군 13년(1621) 6월 24일 갑오.

50) 『인조실록』 18권, 인조 6년 1월 9일 신미.

51) 『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 4월 21일 정유.

52) 『숙종실록』 34권, 숙종 26년(1700) 6월 23일 갑신.

53) 『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7월 23일 임진.

54) 조운선, 2007, 「영조 6년 경술년 모반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제42호, 193쪽.

55) 이하의 내용은 문경득, 2017, 「조선후기 심문 진술 기록의 사료비판 방법론 연구」, 『조선시대사학

판기록의 진술이 유사한 성격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현대 법학의 ‘사실인정 방법론’을 활용하여 진술의 사료비판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의 존재 유무 ② 진술자의 위치와 기회 및 능력 ③ 진술의 시기 ④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네 가지 판단기준으로 특정 진술의 사료비판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간과되고 있는 지점이 있다. 바로 추국장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진술자들의 의도와 다르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다. 우선, 추국장에서 관련자들이 ‘구어’로 진술하는 내용을 문사낭청이 ‘서면어’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기록 규정에 맞게 일부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진술 내용의 뉘앙스가 다소 변할 가능성도 있다. 구어체의 언어를 서면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추안급국안』과 유사한 다른 심문기록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구어체의 언어와 서술 언어 사이에 간극이 컸던 조선시대 기록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우철은 급박하게 구술로 진술되는 공초를 서면어로 표기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⁵⁶⁾ 동음이자(同音異字)의 한자를 잘못 표기하거나 비슷한 모양의 한자를 오기(誤記)하거나, 특히 상한(常漢)의 인명을 오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⁵⁷⁾ 즉, 죄인이 피를 흘리며 신음하면서 내뱉는 말들을 빠르게 기록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서면어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들의 존재는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김우철은 오늘날 연구자들이 ‘오류’처럼 보이는 것이 당시 문사낭청의 입장에서 보면 “착오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⁵⁸⁾ 따라서, 특정한 오류에 대한 분석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장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문사낭청이 추국 과정에서 일정한 주체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물론, 문사낭청이 죄인을 심문하고 관련 진술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주체성을 갖는다고 해서, 현존하는 추국 기록이 모두 ‘조작’되거나 ‘날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추안급국안』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보는 관점을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추안급국안』은 형옥(刑獄)관련 1차 자료”라고 하거나,⁵⁹⁾ “일정한 기획으로 편집된 문서가 아니며”,⁶⁰⁾ “현장의 대화를 그대로 기록한 텍스트”⁶¹⁾ 와 같이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추국의 현장을 ‘그대로 기록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것만 같은 사진 역시 피사체를 담아내는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특정한 의미를 담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 한승훈의 『추안급국안』에 관한 방법론 연구를 주목할만하다.⁶²⁾ 종교학 전공자인 한승훈은 『추안급국안』 종교자료로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먼저 『추안급국안』을 읽어내는 기존의 방법을 한승훈은 두 가지로 대별한다. 하나는 “역사에서

보』 제83호, 281-311쪽 참조.

56) 김우철, 위의 논문, 69쪽.

57) 김우철, 위의 논문, 69쪽. 그 외에도, 『추안급국안』에 나오는 인명에 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성의 이름은 성씨를 사용하지 않는 관행, 역적 집안의 후손일 경우 향렬을 바꾸어 개명하는 관행, 대질 심문의 경우 당사자들이 서로 알고 있는 제삼자에 대해 자(字)를 호칭하는 관행, 동음을 지닌 이름을 오기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인명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김우철, 위의 논문, 66-72쪽; 변주승·유경민, 앞의 논문, 206쪽 참조.

58) 김우철, 위의 논문, 68-69쪽.

59) 김우철, 2015, 「『推案及鞫案』 번역과정에서의 校勘 사례」, 『고전번역연구』 제6호, 81쪽.

60) 정광호, 1975, 「推案及鞫案」, 『민족문화』 제1집, 119쪽.

61) 변주승·유경민, 2018, 「근대국어 시기의 이두 문헌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의 한글 요소에 대한 연구」 『구결연구』 제40호, 179쪽.

62) 한승훈, 2020, 「종교 자료로서의 심문 기록: 추국 문서와 조선후기 종교사」, 『종교문화비평』 제37호, 187-217쪽.

망각된 변란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대변하는 ‘변호사’의 입장”이다.⁶³⁾ 다른 하나는 ‘수사관’의 입장이다. 이는 문경득이 시도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순되는 진술들을 바탕으로 실제적 진실을 재구성하려는 태도”이다.⁶⁴⁾ 그러나 문경득과 달리 한승훈은 추국이라는 법정에서 “피의자들이 언제나 진실이나 진심을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에 주목한다. 오히려 이해관계가 엮인 고발자, 증인들, 피의자, 심판자 등이 서로의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아울러 방법론적으로 볼 때 “당시 사건의 실체를 재구성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지적한다.

종교학자인 한승훈이 보기에 『추안급국안』에 기록되어 있는 심문기록을 통해서 당대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내는 것보다는 “당대인들의 종교적 상상력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⁶⁵⁾ 그래서 한승훈이 제기하는 대안적인 방법론은 변호사나 수사관이 아니라 ‘인류학자’의 방법이다. “인류학자가 관찰하여 기록한 민족지는 객관적인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관찰자의 선입견과 목적에 따라 ‘구성된 사실’이다.”⁶⁶⁾ 따라서 『추안급국안』의 기록은 마치 인류학자가 작성해 놓은 민족지적 수첩과 같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인류학자의 노트는 연구하는 자와 연구되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간문화적 대화의 산물이다. 인류학자와 원주민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 문화적 장벽은 엘리트 문화에 속한 추국관과 그와는 구분되는 민중문화에 속한 피의자들 사이에도 존재했다. 추국 문서는 변란 참여자들의 구어로부터 한문으로의 언어적 번역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적 번역의 산물이기도 하다.”⁶⁷⁾

한승훈은 추국을 하는 정치지배층의 입장에서 볼 때, 민중문화를 기반으로 한 진술이 일종의 ‘문화적 번역’의 산물이라고 한다.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특히 민중사상의 상상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견 허황되어 보이는 민중들의 진술들이 ‘문화적 번역’의 대상으로 충분히 간주할 수 있음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법정에서 참여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진술은 곧 각자의 입장에서 재구성된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기에 더하여, 당시 법정의 진술을 기록하던 ‘기록자’ 역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추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진술 내용을 재구성하고 있었음에 주목한 것이다. 조선시대 추국에서 문사낭청은 때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치적 역할을 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명시적인 오류가 발각되어 기록자 스스로가 추국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인 사건으로 휘말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추국장이라는 공간이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공간이 아니라 추국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임을 더욱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⁶⁸⁾

63) 한승훈, 앞의 논문, 196쪽.

64) 한승훈, 위의 논문, 196쪽.

65) 한승훈, 위의 논문, 197-198쪽.

66) 한승훈, 위의 논문, 198쪽.

67) 한승훈, 위의 논문, 199쪽.

68) 추국의 공간을 정치적인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하경, 2021, 위의 논문, 116-120쪽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재서술한 것임.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반역자를 심판하는 추국장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행위자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투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⁶⁹⁾ 우선, 일정한 행위를 반역이라는 위법행위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혹은 그러한 위법행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논하면서, 추국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벌인다. 아울러, 형신을 동반하는 추국의 현장에 죄인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정치권위자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계기로 삼기도 하였다. 반면, 추국장에 선 죄인으로서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한데도 일부러 논란이 될만한 상소문을 올리거나, 타인을 무고(誣告)하여서라도 왕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한 예도 있다.⁷⁰⁾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기록하는 기록관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묻어날 수밖에 없는 기록을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어떠한 태도로 읽어내야 할 것인가? 한승훈이 종교학자의 관점에 서서 추국에 선 허황된 진술 속에서도 의미 있는 고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정치학자의 관점에 선다면 추국의 기록은 ‘정치적 텍스트’로서 의미가 있다. 즉, 추국의 기록을 통해 특정 시기의 반역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수사관’의 태도나 형신을 받고 신음하던 자들의 진술을 재구성해 보고자 하는 ‘변호인’의 태도가 아니라, 철저히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추국 기록을 살펴보아야 한다.

나탈리 데이비스(Natalie Davis)가 흥미롭게 보여준 바와 같이, 객관적인 것으로 보이는 법정 진술이 실제로는 자신의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⁷¹⁾ 데이비스는 16세기 청원하는 문서를 분석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설득력 있게 하려고, 당대에 친숙한 네러티브로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기록을 끊임없이 가공(crafting)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거짓’이나 ‘조작’이 아니라 진술 속에 있는 ‘픽션(fiction)’인데, 이것이야말로 법정기록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오늘날 수백 년 전의 심문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수사관’의 입장에 서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추국에 참여하는 정치행위자들 역시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심문의 질문내용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심문을 받는 자들은 단순히 고문을 견딜 수 없어서 거짓으로 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이들 역시 자신의 진술 내용을 가공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추국장 한쪽에서 열심히 질문을 전달하고 진술을 기록하던 문사낭청 역시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을 개입하면서 나름의 추안을 작성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추국이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이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로 재해석 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 서게 된다면, 특정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이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추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믿고자 했던, 그럴듯해 보이는 네러티브가 그들에게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재’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⁷²⁾

69) 이하경, 2018.

70) 무고와 관련해서는 이하경, 2020, 「조선후기 ‘무고모역’의 정치적 의미: 영조 시대 법규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54집 1호, 5-27쪽 참조.

71) Natalie Davis, 1987, *Fiction in the Archives: Pardon Tales and their Tellers in Sixteenth Century Fra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72) 실재(reality)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관점은 피터 버커·토마스 루크만(하홍규 역), 2013, 『실재의 사회적 구성』, 문학과 지성사, 197-277쪽 참조.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추국에서 문사낭청의 법적 지위 및 역할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문사낭청의 정치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우선, 문사낭청에 관한 별도의 법규 규정은 부재하기 때문에, 문사낭청에 관한 지위나 품계가 법제상으로 명확하지는 않다. 의금부 당상관과 달리 당하관은 조선시대 직명과 품계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변화하였다. 다만, 당하관이 주로 종 5품에서 종 9품인 점을 미루어, 당하관에 해당하는 문사낭청의 품계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실제 추국 기록의 참여명단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사낭청의 참여 인원은 주로 추국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은대조례』나 『금오헌록』에서는 왕이 직접 추국의 현장에서 심문을 지휘하는 친국인 경우 8명, 궐내에서 진행되는 정국인 경우는 6명, 의금부에서 진행되는 추국일 경우 4명, 삼성추국을 진행할 경우는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왕이 전좌하는 친국의 경우는 사건의 중요도나 위급성 등이 다른 사건에 비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문사낭청을 비롯하여 참여하는 관원 역시 다른 추국의 종류에 비해 많다. 다만, 『은대조례』에서 문서의 번잡함 등의 이유로 실제 추국에 참여하는 인원은 유동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안급국안』의 참여명단에서도 사안에 따라 규정 인원보다 더 많거나 적게 참여한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죄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과연 낭청들이 제대로 심문하였는지가 논란이 된 사례들과 문사낭청이 추국 기록을 빠뜨리거나 왜곡했다는 것이 논란이 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추국에서 죄인에게 진술을 받아내고 관련 진술을 기록하는 관원이었던 문사낭청의 주체성이 사안에 따라서는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문사낭청이 기록한 추국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의 원사료라기 보다는 ‘정치적 텍스트’로 읽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안급국안』은 300여 년간의 추국 기록을 모아 놓은 거질의 사료로서, 다른 사료에서 찾기 어려운 추국 과정의 전모를 보여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추국 기록에는 죄인을 어떻게 체포하여, 어떠한 심문을 거쳤는지, 심문의 결과 어떤 법규에 따라 형벌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형벌을 어떻게 집행했는지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연대기적 자료에서 담고 있지 않은 사항들을 자세히 엿볼 수 있기에, 그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정기록을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의 연구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추국 기록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기록자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들에 비판이 주를 이루었고, 기록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록을 변형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록자까지도 정치적 행위자로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시대 반역자를 심문하던 정치적 공간인 추국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한다고 본 것이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및 법률자료 <http://db.history.go.kr/law/>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main.do>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후광세첩(厚光世牒)』 <https://db.itkc.or.kr/>

- 김영석, 2013, 「의금부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우철, 2015, 「『推案及鞫案』 번역과정에서의 校勘 사례」, 『고전번역연구』 제6호
- 김진옥 역주, 2016, 『의금부의 청헌, 금오헌록』, 보고서
- 박명양·이의현 편 (김영석 역), 2016, 『금오헌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변주승·유경민, 2018, 「근대국어 시기의 이두 문헌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의 한글 요소에 대한 연구」, 『구결연구』 제40호
- 오갑균, 1995, 『조선시대 사법제도 연구』, 삼영사
- 이강욱 역, 2012, 『은대조례』, 한국고전번역원
- 이하경, 2018, 「조선후기 추국장의 정치적 의미: 영조 13년(1737년) 김성탁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50호
- 이하경, 2020, 「조선후기 ‘무고모역’의 정치적 의미: 영조 시대 법규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54집 1호
- 이하경, 2021, 「조선후기 추국장에서의 왕: 영조시기 『추안급국안』 사례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63호
- 전주대학교 한국학고전연구소 편, 2014, 『추안급국안』, 흐름출판사
- 정광호, 1975, 「推案及鞫案」, 『민족문화』 제1집
- 조운선, 2007, 「영조 6년 경술년 모반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제42호
- 피터 버커·토마스 루크만(하홍규 역), 2013, 『실재의 사회적 구성』, 문학과 지성사
- 한승훈, 2020, 「종교 자료로서의 심문 기록: 추국 문서와 조선후기 종교사」, 『종교문화비평』 제37호
- Natalie Davis, 1987, *Fiction in the Archives: Pardon Tales and their Tellers in Sixteenth Century Fra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영문요약

Court Writers at State Tribunal in Chosŏn Korea

This research examines the political role of court writers of the *Interrogation Records* at the State Tribunal in Chosŏn Korea. The court writers were officials temporarily assigned to the State Tribunals, responsible for drawing up interrogation questionnaires, reciting the interrogative documents to the accused and witnesses, and recording testimonies and statements throughout the judicial process. Current literature on the Chosŏn interrogation has not paid due attention to these writers. For a new approach to the *Interrogation Records*, this research argues that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the political aspect of the court writers. Studies on *Interrogation Records* have questioned the validity of

the testimonies under duress and examined problems arising from organizing oral testimonies into written statements. In contrast, this research deals with cases in which court writers actively shaped narratives of the testimonies and statements while recording the judicial procedures of the Tribunal. In some cases, the writers were impeached or brought to State Tribunals for fabricating or omitting specific words in the testimonies and statements from the written records. Through these case studies, this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the political meanings of judicial space in the Chosŏn era and explor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on the *Interrogation Records*.

Key words: Chosŏn, State Tribunal, Court Writers, *Interrogation Records*